

투자권유준칙

제정 2009.02.04

개정 2009.03.27 2009.11.13 2010.03.04

2010.12.06 2011.10.31 2012.01.18

2012.08.03 2012.10.02 2012.11.26

2013.03.01 2013.09.13 2014.06.02

2014.10.01 2015.11.16 2016.04.01

2016.07.04 2016.07.18 2017.01.01

2018.01.01 2019.12.31 2020.04.01

2020.07.01 2021.05.18 2021.09.17

2023.01.01 2023.04.13 2023.12.29

2024.03.01

I. 총칙

1.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라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2)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3)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4)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파생형 집합투자증권<레버리지·인버스 ETF 포함>,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적정성원칙 대상상품 중 어느 하나를 취득·처분하는 금전신탁계약의 수익증권 등)

나.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각목의 대출성 상품 (신용공여 등)

3.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임직원 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4) 임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투자자 구분 등

4. 방문 목적 확인

- 1) 임직원 등은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 등은 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3)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 금소법상 "전문금융소비자"란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소법 제2조에 따른 투자자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전문투자자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포함되며,

- 대출성 상품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상 법인, 경영여신업자,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특정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등이 포함한다.

Ⅲ.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6.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참고8]의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 나. 유의사항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따라서 이 경우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3)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 4)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 5) 4)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7.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에 대한 특칙

-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1)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수단(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10. 및 12.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 3) 임직원은 2)의 경우에,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IV.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IV-1. 투자자정보

8.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1)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참고 1]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과 별개로 "현재투자자금성향"은 판매시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 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참고3]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3)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Ⅲ.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 5)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참고2]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9.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1) 임직원 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투자자의 이메일, 전화번호 등에 대한 정보 포

함)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3)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4) 1)부터 3)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 및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IV-2. 투자권유

10. 투자권유 절차

- 1) 임직원 등은 회사가 정한 [참고5]의 적합성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참고4]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4)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참고9]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나. 유의사항 :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5) 임직원등은 가)의 투자자에게 나)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교부대상자 :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나. 대상상품 : ELS, ELF, ELT, DLS, DLF, DLT

- 6)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 할 수 있다)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1.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 1)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10. 1)에 따른 [참고 5]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참고 6]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임직원 등은 만 65 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 할 수 있다)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 1)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법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가.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3)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참고7]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1. 투자권유 시 유의사항

- 1)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1), (2)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투자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사모펀드,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2)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 장외파생상품
-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가)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①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②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③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다) 신탁계약
 - ①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② 법 제10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3)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 (가)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 (나)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 마.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사.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아.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 자.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차.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카.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타. 관계법령 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3)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4)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 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나. 계열회사 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 하여야 한다.

13-2. 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1)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투자권유불원 등)는 영업점 책임자(회사 영업점 전결규정에 따라 지점장 등 책임자)를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IV-3. 설명의무

14. 설명의무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2) 1)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투자자 :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나. 임직원등 :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 3) 설명서(또는 금융상품 투자확인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 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 4) 임직원 등은 1)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5) 임직원 등은 1) 부터 4)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임직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 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나.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다.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7)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서의 맨 앞에 두어야 한다. 다만, 예금성 상품 등 설명서의 내용이 간단하여 요약이 불필요한 금융상품은 제외할 수 있다.
 - 가.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나. 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다.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 라. 민원 등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 8)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 가. 서면교부
 -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 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9) 임직원 등은 1)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점명, 성명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15-1.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 나.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 다.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 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 나.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 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 3)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 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 다.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여부 및 헤지 정도
 - 라.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 마.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15-2.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 나. 상각·전환의 사유 및 효과
 - 다.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라.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마.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 바. 사채의 순위

V.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6.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 1) 회사는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및 [참고13]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 ①기초자산의 변동성, ②신용등급, ③상품구조의 복잡성, ④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⑤환매·매매의 용이성, ⑥환율의 변동성, ⑦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2)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은 [참고13]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 3)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4) 임직원 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측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VI.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17-1. 계약서류의 교부

- 1)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 가. 서면교부
 -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 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2)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3)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17-2. 청약의 철회

- 1)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17-2 및 17-3에서 '서면등' 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가.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나.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 ①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17-2에서 '금전등' 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③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④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금전신탁계약에 대하여 청약 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숙려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 2)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경우 회사는 투자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금소법 시행령 제 37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금소법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나. (금소법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 ①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금전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②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금전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3)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4)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 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17-3. 위법 계약의 해지

- 1)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 의무)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 권유 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 가.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계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 나.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 2) 투자자가 1)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 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3)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다.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라.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 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 (2)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 마.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4) 회사는 2), 3)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5) 회사 고유계정을 통해 위법행위 대상 상품을 인수하게 된 경우 별도 계정을 통해 관리한다.

18.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 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19.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1)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나.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다.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라. 개별 매매거래 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2) 자기매매등을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당한 권유 금지

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자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

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바.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사.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 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 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아.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자.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 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등
 -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사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아.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자.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카. 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 타.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1)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가. 1)의 각 호의 사항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21.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및 2)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1) 내지 2)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장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22.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파생상품등에 운용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직원 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참고1]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의 경우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2) 임직원 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참고3]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맞춤형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 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 회사는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맞춤형 투자자성향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임직원 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다.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맞춤형 투자성향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금전 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23.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 1)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3)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24.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 1) 금융투자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2)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동안)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3)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25.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특칙

- 1) 임직원 등은 사모 신기술투자조합에 투자(출자)하는 일반투자자에게 적합성·적정성원칙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권유시 알려야 하며, 일반투자자가 요청시 적합성·적정성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모 신기술투자조합 출자증권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 2)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사모 신기술투자조합에 투자권유하는 경우, 금소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절차에 따른 설명서 교부 및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그 사실을 서명등으로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 3) 임직원 등은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사모 신기술투자조합 투자권유시 금소법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VII. 부칙

(시행일) 이 준칙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준칙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준칙은 201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준칙은 2012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준칙은 2012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준칙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준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준칙은 201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준칙은 2014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준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준칙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준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준칙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준칙은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준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준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준칙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준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준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준칙은 202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준칙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준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준칙은 2023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준칙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준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1]

<개인투자자용>

(투자성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 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고객정보를 미제공 하거나 투자권유를 미희망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 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거나, 전문금융소비자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투자자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고객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고객정보 미제공(권유 불가)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 희망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 미희망(불원)
-----------------	--	---

분류		질문항목	배점
연령	고객님의 <u>연령대</u> 는 어떻게 되십니까 ?	<input type="checkbox"/> 만 19 세 미만(미성년자)	1
		<input type="checkbox"/> 만 19 세 이상 ~ 만 25 세 미만	3
		<input type="checkbox"/> 만 25 세 이상 ~ 만 60 세 미만	5
		<input type="checkbox"/> 만 60 세 이상 ~ 만 65 세 미만	4
		<input type="checkbox"/> 만 65 세 이상	2
투자목적	1.취득 및 처분 목적	<input type="checkbox"/> 자산증식	10
		<input type="checkbox"/> 생활비	5
		<input type="checkbox"/> 채무상환	-5
재산상황	2.월소득 현황	<input type="checkbox"/> 1,000 만원 이상	10
		<input type="checkbox"/> 1,000 만원 미만	8
		<input type="checkbox"/> 600 만원 미만	6
		<input type="checkbox"/> 300 만원 미만	4
		<input type="checkbox"/> 100 만원 미만	2
금융 투자상품 지식수준	4.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 등)에 대한 지식수준 및 이해도 (구조 및 위험 등)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대부분을 이해하고 있음	15
		<input type="checkbox"/>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10
		<input type="checkbox"/> 일정부분 이해하고 있음	5
		<input type="checkbox"/> 거의 이해하지 못함	0
		<input type="checkbox"/> 선물옵션·주식·신용거래·파생상품·펀드, BW등	20
투자경험	5.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상품	<input type="checkbox"/> 주식, 주식형 펀드, 투기등급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CP), 원금비보장 ES 등	16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펀드,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CP), 원금부분지급형 ES 등	12
		<input type="checkbox"/> 채권형 펀드,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CP), 원금지급형 ELB 등	8
		<input type="checkbox"/> 국채, 지방채, MMF, 환매조건부채권(RP) 등	4
		<input type="checkbox"/> 투자경험 없음	0
		투자경험	6.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경험기간
<input type="checkbox"/> 3년 미만	8		
<input type="checkbox"/> 2년 미만	6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4		
<input type="checkbox"/> 전혀 없음	2		

분류		질문항목	배점
감내가능 손실수준 (투자위험 감수능력)	7.기대이익 및 손실가능 수준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 100% 범위	10 7 4 0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 5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 3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 10% 범위	
투자예정 기간	8.현재 투자하고자 하는 자산의 투자예정기간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10 5 2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9.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 등에 투자한 경험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경험 없음 ~ 1년 미만	

※ 본 확인서의 작성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변경 또는 신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취약투자자 여부	취약투자자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고령투자자 <input type="checkbox"/> 미성년자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 무경험자 <input type="checkbox"/> 정상적인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input type="checkbox"/> 문맹자 <input type="checkbox"/> 은퇴자 <input type="checkbox"/> 주부 ※ 상담직원은 상담고객이 취약투자자인 경우 투자설명을 강화(추가확인서 청구 등)하고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의 이해여부를 확인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동 판단 자동 판단 판단 판단 판단

※ 취약투자자 여부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로 제공받는 정보가 아니며, 회사가 별도로 관리합니다.

투자자 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작성일	년 월 일	투자자(본인)성명	(서명/인)
대리인 성명	(서명/인)	본인과의 관계	
계좌번호			



<법인투자자용>

(투자성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 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고객정보를 미제공 하거나 투자권유를 미희망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 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거나, 전문금융소비자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투자자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고객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고객정보 미제공(권유 불가)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 희망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 미희망(불원)
-----------------	--	---

분류	질문항목	배점			
법인유형	<input type="checkbox"/> 거래소 상장법인 또는 전문투자자	5			
	<input type="checkbox"/> 코스닥 상장법인	4			
	<input type="checkbox"/> 비상장 외부감사법인	2			
	<input type="checkbox"/> 그외 법인(비영리법인/단체)	1			
투자목적	1.취득 및 처분 목적	10 5 -5			
	재산상황	2.연간 순이익 규모	10 8 6 4 2		
		3.총 자산(부동산 등을 포함) 대비 투자성상품 비중	10 8 6 4 2		
금융 투자상품 지식수준			4.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 등)에 대한 지식수준 및 이해도 (구조 및 위험 등)	15 10 5 0	
			투자경험	5.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상품	20 16 12 8 4 0
				6.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경험기간	10 8 6 4 2

분류		질문항목	배점
감내가능 손실수준 (투자위험 감수능력)	7.기대이익 및 손실가능 수준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 10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 5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 3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 10% 범위	10 7 4 0
투자에정 기간	8. 현재 투자하고자 하는 자산의 투자에정기간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10 5 2
9.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 등에 투자한 경험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경험 없음 ~ 1년 미만	

※ 본 확인서의 작성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변경 또는 신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 정보 확인

<p>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작성일	년 월 일	투자자(본인)성명	(서명/인)
대리인 성명	(서명/인)	본인과의 관계	
계좌번호			



(대출성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

[일반금융소비자]

<개인투자자용, 법인투자자용>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일반금융소비자)를 파악하여 고객이 신청하신 대출성 상품이 적합·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작성시 약정 및 유형변경 불가)

분류		질문항목	비고
연령		<input type="checkbox"/> 만 19 세 미만(미성년자) <input type="checkbox"/> 만 19 세 이상 ~ 만 25 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만 25 세 이상 ~ 만 60 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만 60 세 이상 ~ 만 65 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만 65 세 이상	(법인 제외)
대출용도	1-①. 신용거래	<input type="checkbox"/> 주식 매수 <input type="checkbox"/> 주식 대주	
	1-②. 대출거래 * 주식담보대출 및 청약자금대출 (스탁옵션행사자금대출)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 매수 <input type="checkbox"/> 가계 자금 <input type="checkbox"/> 법인 자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보유자산등	2. 총자산	<input type="checkbox"/> 1 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3 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3 억 이상	
	3. 부채	<input type="checkbox"/> 1 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3 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3 억 이상	
	4. 고정지출(월)	<input type="checkbox"/> 500 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 천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 천만원 이상	
신용점수	5. 신용점수	<input type="checkbox"/> 0 점 초과 <input type="checkbox"/> 0 점 이하 ※ 당사 기준 0 점 이하(금융채무연체자) 약정 불가하며, 신용(대출)약정 계약 체결 전 회사에서 확인	
변제계획	6. 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매도 상환 <input type="checkbox"/> 근로 소득 <input type="checkbox"/> 임대 소득 <input type="checkbox"/> 연금 소득 <input type="checkbox"/> 사업 소득 <input type="checkbox"/> 기타 소득	

※ 신용거래는 투자성상품 투자자정보 확인결과 '공격투자형' 고객만 가능 합니다.

투자자 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 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년 월 일			
계좌번호		투자자(본인)성명	(서명/인)
대리인 성명	(서명/인)	본인과의 관계	

[참고2]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용>

- ▶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가 일반투자자인 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권유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의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 ▶ 파악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적절한 파생상품을 권유하는 데 활용합니다.
- ▶ 또한 일반투자자가 회사의 권유 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거래)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최대한 투자자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회사는 투자자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거절하거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께서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정보 제공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존정보 변경: <input type="checkbox"/>	기존정보와 동일: <input type="checkbox"/> (유효기간 24개월 이후)
투자자유형	상장기업: <input type="checkbox"/>	비상장기업: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1년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이상~3년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이상: <input type="checkbox"/>

I. 투자자의 재무현황

1. 재무현황

자산 총계: _____ 외화자산 총계: _____
 부채 총계: _____ 외화부채 총계: _____
 연간 수출총액: _____ 연간 수입총액: _____
 금융투자자산 보유금액: _____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약정잔액[모든 금융기관 포함]

II. 거래의 목적

거 래 목 적	예	아니오
----------------	----------	------------

투자자에게서는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

III.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자율	상품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위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 내역 및 금액, 보유 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소속 부서: _____	직급: _____	성명: _____	
관련 경력: _____	관련 자격: _____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input type="checkbox"/> (전문가 수준):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input type="checkbox"/>
2. 장외파생상품 거래체결 담당자*			
소속 부서: _____	직급: _____	성명: _____	
관련 경력: _____	관련 자격: _____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input type="checkbox"/> (전문가 수준):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input type="checkbox"/>
3. 투자자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임(직)원들이 모두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투자자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투자자께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투자자가 법인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회사와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로서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거래 인감(서명감)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V. 위험관리능력

위험관리능력	예	아니오	비고
1.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조직명: _____ 인원수: _____
2.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규정명: _____

3.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전산시스템명: _____
------------------------------------	--------------------------	--------------------------	---------------

VI. 금융거래수준

투자자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종류	경험유무	건수	거래연수	거래규모※
선물환(FX Forward)				
FX 스왑(FX Swap)/통화스왑(Currency Swap)				
구조화 통화 옵션(Exotic FX Option): KIKO 등				
금리 스왑(Interest Rate Swap)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상품 파생(Commodity Derivatives)				
기타 유형: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투자자 확인

-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 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작성일자: _____년 _____월 _____일
 직 위: _____ 담당자: _____ (인/서명)
 법인명: _____ (인/서명)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확인

- ▶ 이 확인서 내용은 유안타증권 주식회사가 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_____년 _____월 _____일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지점/부서명) : _____
 담당자: _____ (인/서명)

고객이 기명 날인(또는 서명)한 본 확인서 사본에 회사가 기명날인한 후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본 조사표 원본은 회사가 보관합니다.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개인투자자용>

- ▶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가 일반투자자인 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권유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의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 ▶ 파악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적절한 파생상품을 권유하는 데 활용합니다.
- ▶ 또한 일반투자자가 회사의 권유 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거래)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최대한 투자자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회사는 투자자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거절하거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께서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정보 제공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존정보 변경: <input type="checkbox"/>	기존정보와 동일: <input type="checkbox"/> (유효기간 24개월 이후)
투자자유형	만65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만65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만19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1년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이상~3년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이상: <input type="checkbox"/>

I. 투자자의 재무현황 및 투자경험

1. 재무현황

자산 총계: _____ 외화자산 총계: _____
 부채 총계: _____ 외화부채 총계: _____
 금융투자자산 보유금액: _____

2. 현재(과거포함)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약정잔액[모든 금융기관 포함]

상품명	가입연월	가입금액
선물환(FX Forward)		
FX 스왑(FX Swap)/통화스왑(Currency Swap)		
금리 스왑(Interest Rate Swap)		
기타 유형: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 가입금액은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II. 거래의 목적

거 래 목 적	예	아니오
투자자께서는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II.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자율	상품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위험회피(헤지) 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 내역 및 금액, 보유 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확인

-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 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작성일자: _____년 _____월 _____일

주민등록번호: _____

투자자명: _____ (인/서명)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확인

- ▶ 이 확인서 내용은 유안타증권 주식회사가 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_____년 _____월 _____일

유안타증권주식회사 (지점/부서명) _____

담당자: _____ (인/서명)

고객이 기명 날인(또는 서명)한 본 확인서 사본에 회사가 기명날인한 후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본 조사표 원본은 회사가 보관합니다.



[참고3]

투자자성향 분류 기준

1. 분류 기준

가. 투자자성향 :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5단계로 분류한 투자자 투자성향과 매칭하여 확정함

나. 맞춤형 투자자성향 :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투자예정기간을 감안한 맞춤형 투자성향과 매칭하여 확정함.

2. 분류 결과

가. 투자자성향

합산 점수	투자자성향	비 고
20점 이하	안정우선형	
20점 초과 ~ 40점 이하	안정선호형	
40점 초과 ~ 60점 이하	위험중립형	
60점 초과 ~ 80점 이하	수익선호형	
80점 초과	수익우선형	

나. 맞춤형 투자자성향

합산 점수	투자예정기간을 감안한 맞춤형 투자자성향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20점 이하	안정우선형	안정선호형	안정선호형
20점 초과 ~ 40점 이하	안정선호형	안정선호형	위험중립형
40점 초과 ~ 60점 이하	안정선호형	위험중립형	수익선호형
60점 초과 ~ 80점 이하	위험중립형	수익선호형	수익선호형
80점 초과	위험중립형	수익우선형	수익우선형

[참고4]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적합한 투자자성향	수익우선형	수익선호형 이상		위험중립형 이상	안정선호형 이상	안정우선형 이상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선물/옵션)					
집합투자증권	■ 설정3년미만 1.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2. 최대 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설정3년미만 1.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2.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설정3년미만 1. 고위험자산에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2. 최대손실률이 20%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설정3년미만 1. 고위험 자산에 5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2. 중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설정3년미만 1.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2.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설정3년미만 1.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2.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설정3년이후 97.5% VaR 50%초과	■ 설정3년이후 97.5% VaR 50%이하	■ 설정3년이후 97.5% VaR 30%이하	■ 설정3년이후 97.5% VaR 20%이하	■ 설정3년이후 97.5% VaR 10%이하	■ 설정3년이후 97.5% VaR 1%이하
파생결합증권/사채 (ELS/DLS, ELB/DLB)	손실 발생시 해외주식을 실물로 인도 받는 경우(2asset이상인 경우 worst performer 기준)	원금비보장형 (최대손실률 20%초과 100%이하)	원금부분지급형 (원금 부분지급 비율 80%이상 90%미만)	원금부분지급형 (원금 부분지급 비율 90%이상)	ELB, DLB (원금지급형)	
파생결합증권 (ETN, ELW)	ETN, ELW					
지분증권(주식 등)	투자경고(위험), 관리종목, 정리매매, K-OTC, 비상장주식, KSM, 신주인수권증권(증서), 해외주식, 파생상품ETF	매우높은위험 (1등급) 이외 종목				
채권	B+이하 또는 무등급, 조건부자본증권	BB- ~ BB+	BBB- ~ BBB+	A- ~ A+	AA- ~ AAA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특수채(AAA) 등*
CP/전자단기사채	B+이하 또는 무등급		A3- ~ A3+	A2- ~ A2+	A1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특수채(AAA) 등*
해외채권 (환헛지 없음)	BBB0 이하 또는 무등급, 조건부자본증권	BBB+ ~ AAA				
해외채권 (환헛지 있음)	B+ 이하 또는 무등급 (단, 조건부자본증권은 1등급)		BB- ~ BBB0	BBB+ ~ A0	A+ ~ AA0	AA+ ~ AAA
특정금전신탁	주5) 참고					
투자일임계약	주6) 참고 (가중평균 투자위험도에 따라 구분)					
RP					RP	
신용거래	신용매매 예탁증권담보용자					

	대차차입의뢰					대차대여의뢰
CFD	CFD(차액결제거래)					

주1) 장외파생상품

- 가. 주의 :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 나. 경고 :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 다. 위험 : 가, 나를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주2) 집합투자증권(사모펀드)

가. 사모펀드의 경우 상단의 집합투자증권 기준으로 평가가 곤란하거나, 아래(1~4)에 해당하면 1등급을 부여한다. (설정 3년 이후에도 동일)

1. 비유동성자산(비상장주식, 부동산 관련 자산 등)을 20% 이상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
2.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자산(파생상품, 자산유동화 증권, 구조화 상품 등)을 20% 이상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
3. 해외자산을 20% 이상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
4.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

나. 사모펀드의 경우 운용사와 판매사의 위험등급이 상이할 경우에는 두 개의 위험등급 중 높은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주3) 파생결합증권(사채) <ELS/DLS (ELB/DLB)>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서 정의한 등급에서 1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급을 상향하더라도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 가. 외화청약의 경우(단, 원금지급형 ELB, DLB 제외)
- 나. 기초자산의 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다.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은 경우 (예 : 전락지수 등)
- 라. 등급산정일 과거 10년간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일정 수준(25%)를 초과하는 경우
- 마. 낙인배리어(Knock-in Barrier)가 60%이상인 경우 또는 낙인배리어가 없는 노낙인형 상품의 만기배리어 요건이 70% 이상인 경우
- 바. 손실발생구간의 손실배수가 기초자산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4) 채무증권(채권, CP/전자단기사채, 해외채권)

가. 국고채~특수채 등 : 자본시장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등으로 사채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채무증권

나. 해외채권은 국제신용평가사 등급 기준 (예 : S&P, Fitch, Moody's)

주5) 특정금전신탁

- 편입 대상 자산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동일하며, 복수의 편입 대상 자산이 있는 신탁 또는 비지정형 신탁의 경우에는 편입 자산 중 가장 높은 위험등급과 동일하게 산정함.

- 기타 편입자산

- 가. 은행(AAA) 예금 : 6등급
- 나. 은행(AAA이외) 예금, [CMA, 발행어음, MMDA]등과 유사한 자산, 지역농협 예금, 저축은행 예금 : 5등급
- ※ 저축은행 예금의 경우, 회사의 신용등급과 투자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험등급 적용가능

주6) 투자일임계약

Wrap 투자위험등급	점수	분류기준
매우높은위험 (1등급)	6	5.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6.0
높은위험 (2등급)	5	4.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5.5
다소높은위험 (3등급)	4	3.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4.5
보통위험 (4등급)	3	2.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3.5
낮은위험 (5등급)	2	1.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2.5
매우낮은위험 (6등급)	1	1.0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 1.5

- 가중평균 투자위험도 계산 : $\sum(\text{최대 투자가능 비중} * \text{자산별 최고 투자위험도})$
-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 상기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분류표를 준용함

[참고5]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권유 적합성 판단 기준

위험등급 투자자성향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안정우선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선호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수익선호형	투자권유불가					
수익우선형						

※ 금융투자상품 등의 범위에 장외파생상품은 제외됨.

[참고6]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 기준

1. 고령투자자의 정의

- 1) 만 65 세 이상은 고령투자자라 한다
- 2) 고령투자자 중 만 80 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보호기준을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라 한다.

2. 고령투자자에 대한 강화된 보호기준

1)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 가. 고령투자자 내점시 고령투자자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고령투자자가 내점하는 경우 가급적 해당창구를 이용하도록 먼저 안내해야 하나 고객이 특정 직원과 상담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나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창구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다. 전담창구직원은 고령투자자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매를 자제하여야 한다.(수탁거부 가능)

2)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투자권유 유의상품”(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주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결합증권, 조건부자본증권 등)으로 지정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에는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시 사전 확인

- 가.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사전확인 관리자가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사전확인 관리자는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상품설명후 대면 등), 또는 유선을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 다. 사전확인 관리자가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라. 사전확인 관리자가 확인결과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판단되지만 상품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확인관리자가 추가로 설명한 후 고객의 투자의사를 재확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3. 초고령투자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보호기준

1)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시 보다 강화된 보호기준 준수

“투자권유 유의상품”(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주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결합증권, 조건부자본증권 등)으로 지정된 금융투자상품을 초고령자에게 판매시에는 보다 강화된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력자와의 상담 또는 사전확인관리자의 동석

- 가.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나.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사전확인관리자가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참고7]

장외파생상품의 투자권유 적합성 판단 기준

임직원등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참고5]의 적합성 판단 기준 이외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참고하여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 1. 만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 가. 금리스왑
 - 나. 옵션매수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주권 비상장법인 및 개인사업자,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주권상장법인과 만 65세 미만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위험관리능력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자(일반투자자인 개인은 제외)에 대하여는 가 목부터 다 목 이외의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투자권유할 수 있다.

- 가. 금리·통화 스왑
- 나. 옵션 매수·매도
- 다. 선도거래

구 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개인	만65세 이상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만65세 미만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사업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주권 상장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경고'위험도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일반투자자인 개인은 제외)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참고8]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7 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 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투자자 확인사항>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권유 희망 여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2.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투자자정보를 제공함)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거래 희망시에는 체크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참고9]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가입시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원칙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3.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4. 투자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원칙*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해당 상품이 귀하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정성원칙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절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투자자 확인사항

적합(적정)성 진단 결과	투자자성향	()
	투자성 상품의 위험 등급	()

적정성 판단 보고서

적정성 판단 결과 및 이유	결과	(부 적 정)
	이유	투자자성향 대비 가입희망하는 상품의 투자위험도가 높음

[참고10]

상품가입신청서상 설명내용 고객·판매 담당 임직원 확인

(고객)

1.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설명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미교부)
2.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3. 동 상품의 위험등급은 (매우높은위험/높은위험/다소높은위험/보통위험/낮은위험/매우낮은위험)으로 최대 원금 전액손실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환매불가여부 등 해당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였음

(판매 담당 임직원)

1. 고객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하며 상품의 위험도, 최대손실 가능성, 수수료, 조기상환 또는 환매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였음을 확인하였음

*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현금예수금(위탁자예수금·수익자예수금), 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 일부 담보금, 비과세종합저축 등 저축자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대상임

[참고11]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 유의사항

1.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입니다.
2. 로보어드바이저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투자조언으로서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실현된 기존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이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은 잘못된 운용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투자자는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4.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합리성, 법규 준수성,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알고리즘의 수익성 및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 분산투자, 투자자성향 분석, 해킹방지체계 등 투자자문·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이에 따라,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에 비해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일임과정에 사람의 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상황의 급변 등 필요시에는 투자운용인력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 (※ 회사의 전문인력 개입관련 정책에 따라 "5."는 표기 생략 가능)

[참고12]

적정성 판단보고서 (대출성상품)

계좌번호		계좌명	
------	--	-----	--

상 품 명	대출성상품
-------	-------

■ 걱정성 판단 결과 및 이유

결 과	부 적 정
이 유	<input type="checkbox"/> 고객님의 신용점수가 대출성상품 약정 체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p>1. 동 보고서는 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계약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회사가 고객에게 알리는 경우에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p> <p>2.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걱정성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걱정성 판단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참고13]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I. 목적

동 기준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 1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과 관련하여 위험등급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

1. 적용대상 금융상품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투자성 상품으로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신탁계약, 일임계약 등을 포함하되, 「금소법」 시행령 제 13 조제 2 항 각 호의 상품*을 제외한다.

* 연계투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03 조제 1 항제 2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2. 위험등급의 산정의 주체

-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이하 '판매회사')는 「1. 적용대상 금융상품」에 포함되는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전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나.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과 금융상품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이 다를 경우, 판매회사는 제조회사와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한다.
- 다. 판매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당해 금융상품의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위험등급을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그 절차와 방식 등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른다.

3. 위험등급 체계

위험등급은 최소 6 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 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하며, 그 수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등급 구간별 명칭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4. 위험등급 산정방식

판매회사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각 위험요소별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것은 'Ⅲ.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①기초자산의 변동성, ②신용등급, ③상품구조의 복잡성, ④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⑤환매·매매의 용이성, ⑥환율의 변동성, ⑦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① 시장위험* 등급은 투자성 상품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Ⅲ.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 단계로 산정한다.

*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원금손실 위험을 통칭

② 신용위험* 등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5 조의 3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한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칭

<표 1>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위험등급 분류

구분	6 등급	5 등급	4 등급	3 등급	2 등급	1 등급
----	------	------	------	------	------	------

장기등급	국공채 등 ^{주 1)} , AAA ~ AA-	A+ ~ A-	BBB+ ~ BBB-	BB+ ~ BB-	B+ 이하 또는 무등급
단기등급	A1	A2	A3	B 이하 또는 무등급	

1) 자본시장법 제 118 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등으로 사채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채무증권

2) 신용평가회사에 따라 등급 표시방법이 상이한 경우 상기 등급체계를 준용

③ 시장위험 등급과 신용위험 등급을 모두 산정하는 상품의 경우 「Ⅲ.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두 고려한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④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 위험등급을 1 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외국 통화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 개 등급을 상향할 수 있고, 환율위험에 대한 헤지가 이루어져 환율의 변동성이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환율위험이 위험등급에 이미 반영된 경우 등 등급 상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유동성위험은 해당 상품의 중도환매 가능 여부 및 중도환매시 비용의 정도에 따라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3 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세부사항*은 설명서(「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제 2 항에 따른 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로 기재한다.

* 중도환매 시 발생하는 비용의 수준 등 환매의 용이성을 제한하는 요소 세부내역

또한, 상품 구조상 중도 환매·매매 등에 제약이 없더라도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환매·매매의 용이성이 낮아 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유동성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서에 별도 기재한다.

판매회사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유동성위험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에 직접 반영(등급 상향)할 수 있다.

⑥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 제 7 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상기 위험등급 산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2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위험등급이 2~6 등급인 경우 2 등급을 부여하고 최종 위험등급이 1 등급인 경우 그대로 1 등급 부여

⑦ 판매회사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원금손실 등 상품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Ⅲ.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위험등급이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을 상향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5. 위험등급 산정 시기

위험등급은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1회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판매 및 환매가 가능한 상품(예 : 개방형 펀드)의 경우 연 1회(매년 결산시점) 등급을 재산정한다.

다만,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특정 위험요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기타 현재 사용중인 위험등급이 시장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회사의 판단에 따라 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수 있다.

6. 위험등급 관련 내부통제

판매회사는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상품 출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 평가·검토 절차를 반영하고 이미 판매중인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7. 위험등급의 표시·설명 방법

판매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유동성에 관한 별도 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명함에 있어서 각 위험등급별로 다른 색상으로 나타내는 등 고객이 각 등급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한다.

또한, 위험등급 산정에 반영한 중요 위험요소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기재·설명한다.

판매회사는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Ⅲ.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

1.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은 투자원금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1등급(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을 부여한다.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는 헤지 목적 거래만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예시>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

- | |
|---|
| 가. 주의 :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
| 나. 경고 :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
| 다. 위험 : 가, 나를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

2. 집합투자증권

(1) 공모펀드

-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경우 <표2>에 따라 편입대상 자산의 상품군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한다.

<표 2>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상품군별 위험등급 분류

등급	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1 등급 (매우높은위험)	①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등급 (높은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 등급 (다소높은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 등급 (보통위험)	①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 등급 (낮은위험)	①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 등급 (매우낮은위험)	①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상기 표에 정의된 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설정 3년 경과 펀드는 출시이후부터 등급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표 3>에 따른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표3>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사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3년 일간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과거 수익률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 다만,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에 신용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입자산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 * (예) 장외채권이거나 매매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낮아 시가변동이 미미한 경우

□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Ⅱ.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사모펀드

- 사모펀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위험을 산출한다.
-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별도의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상품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다만, 별도 등급산정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등급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파생결합증권

- (시장위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 개수, 원금손실조건(낙인배리어 수준 등),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회사별로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상장지수증권(ETN)과 주식워런트증권(ELW)은 1등급을 부여한다.
- (신용위험)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분류하되, <표1>의 기준을 준용한다.
-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Ⅱ.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4. 지분증권(주식 등)

- 지분증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2등급을 부여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한 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 비상장 주식은 1등급 상향한다.
 - 해외거래소 상장종목은 1등급 상향한다.
 - 한국거래소의 투자경고(위험)·관리종목은 1등급 상향한다.

5. 채무증권

- 발행사의 신용등급, 보증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회사채*는 <표1>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분류하되, 외부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을 감안한다.
 - * 「자본시장법」제4조③ 및 ⑦ 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파생결합사채) 포함
 -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Ⅱ.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되, 해외채권의 경우 해당국 통화의 종류에 따라 환율위험을 적극적으로 고려(위험등급을 0~2등급* 상향)하고, 당해

채권이 유통되는 해외 시장의 특징 및 환매 또는 매매가 제한될 가능성 등 유동성위험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서에 기재한다.

* 예) 변동성이 큰 신흥국 통화로 투자되는 경우와 같이 환율위험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개 등급 상향 가능

- 조건부자본증권은 상각, 전환 위험 등 조건을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특정금전신탁

□ 특정금전신탁은 편입 대상 자산의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을 정하되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 단일 상품이 편입된 신탁계약(예: ELT)의 경우 편입 자산의 위험등급을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한다.
- 신탁계약에 복수의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편입된 자산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개별 편입자산의 위험등급을 설명한다.
- 비지정형 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 헤지 목적 파생상품의 범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4 ④ 후단(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판단시 제외하는 파생상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준용

7. 투자일임계약

□ 투자일임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총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의 경우, 포트폴리오내 개별 상품의 위험등급을 각 상품별 편입 비중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전체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6.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임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8. 기타

□ 판매회사는 특정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법규 및 이 기준에서 정한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IV. 보칙

가이드라인은 '23.12.29일 이후 신규로 판매되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시부터 적용하고, 기존에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24.1.1일 이후 'II-5. 위험등급 산정시기'에서 정한 재산정 시점이 도래한 때부터 적용한다.